

Executive Order of the Governor of the State of Maryland

March 30, 2020

3월 23일 행정명령을 개정하고 재서술하며, 대규모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고, 시니어센터를 폐쇄하고, 불필수 비즈니스와 기관을 폐쇄하며, 모든 주민들은 자택에 머물러야 한다.

2020년 3월 5일 주비상사태 선포

2020년 3월 17일 메릴랜드주 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과 조절을 위해 주비상사태 유지

코로나바이러스가 호흡계 질환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쉽게 전염되고 심각한 질병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어, 메릴랜드주 전역 공중보건재앙 직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미질병통제예방센터와 메릴랜드주 보건부는 대규모 모임을 취소하고 소규모 모임 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

Stay-at-Home Order

집에 머무르십시오 (외출제한령)

- a. 메릴랜드 주민들은 집에 머물 것을 명령한다. 이 명령은 2020년 3월 30일 오후 8시부터 유효하다.
 - 아래와 같은 필수적인 활동들을 진행하거나 참여할 경우는 제외된다.
 - 필수적인 비즈니스(Essential Businesses), 기관의 운영자 또는 직원들은 해당 비즈니스, 기관과 집을 오가는 것은 가능하다. 소비자들에게 제품 배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은 가능하다.
 - 불필수적인 비즈니스 운영자와 직원들은 자신들의 집과 해당 비즈니스를 오갈 수 있으나, 최소의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만 가능하다.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배달하는 목적으로 가능하다.

- b. 필수적인 활동들(Essential Activities) 의미
 - 개인, 가족, 가정, 애완동물, 가축을 위해 필요한 용품과 서비스를 획득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식료품, 가정 소비와 사용을 위한 용품들, 자택 근무를 위해 필요한 장비들, 세탁, 안전, 위생 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산품, 집과 거주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 개인, 가족, 가장, 애완동물, 가축을 위한 건강과 안전에 필요한 모든 활동들. 예를 들면 의료, 행동건강, 응급서비스와 약 또는 의료용품을 획득하기 위한 활동들이다.
 - 가족, 친구, 애완동물, 가축을 자택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돌보는 경우. 필수적인 건강과 안전 활동을 위해 가족, 친구, 애완동물, 가축 등을 운반하고 필요한 용품과 서비스를 얻기 위한 활동들이다.
 - 식사를 얻거나 거리두기 교육을 위한 교육 도구들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을 오가는 경우
 - 산책, 등산, 달리기, 자전거 타기와 같은 실외 운동 활동을 하는 경우. 단, 이러한 활동들을 하는 동안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와 메릴랜드주 보건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 규제에서 따라, 수행해야 한다.

- 사법 집행과 법원 명령을 위해 오가야 하는 경우
- 연방, 주, 지방 정부 건물에 필요한 목적으로 가지고 오가는 경우

10명 초과 인원 모임 금지

- 사회적인, 지역사회적인, 영적인, 종교적인, 여가적인, 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모임과 행사를 위해 10명 초과 인원이 모이는 것을 금지한다. 퍼레이드, 축제, 박람회, 모금 행사 등에 제한되지 않고 모든 장소에서 10명 초과 인원이 모이는 것을 금지한다.
- 이미 일정 계획이 잡힌 모임 또는 행사는 취소하거나, 준비상사태가 해제된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

불필수적인 비즈니스 폐쇄

- 미 국토안보부의 사이버 안보·기간시설 안보부로부터 중요한 기간시설분야로 환인되지 않은 모든 비즈니스, 기관, 단체, 시설들은 불필수적으로 분류되며, 폐쇄령에 따라야 한다.
- 불필수적인 비즈니스, 기관, 단체, 시설들의 운영자나 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근무하며, 최소 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
 - 원격근무 조력
 - 필수적인 자산 유지
 - 부패 방지 등과 같은 자산 소실과 손실 방지
 - 우편물 픽업과 임금 지불 등과 같은 필수 행정 기능 수행
 - 살아있는 동물 보살핌
 -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매상

특정 비즈니스, 기관, 시설 폐쇄

- 시니어센터.
주비상사태가 해제될 때까지 모든 시니어센터 폐쇄
- 레스토랑과 바
모든 레스토랑과 바는 운영을 중단해야한다. 다만 헬스케어시설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과 음료 서비스는 제외된다. 일반 레스토랑과 바의 경우엔 포장, 배달,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를 이용한 음식, 음료 판매는 가능하다.
- 피트니스센터
피트니스센터, 헬스클럽, 스파, 체육관, 수영장, 호신술 학교 등은 법, 규제, 행정명령으로 인해 탁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폐쇄한다.

영화관, 극장 폐쇄

- 공연, 영화 상영 등 모든 영화관, 극장 폐쇄

쇼핑몰 폐쇄

- 닫혀진 구조의 쇼핑몰일 경우 내부의 상점과 사람들의 밀집 가능성이 있는 공동 이용 구역 (푸드코트, 라운지, 중앙 홀, 보행자 통로 등)을 폐쇄한다.

쇼핑몰 내 상점이 내부 통로를 이용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면 문을 닫아야 한다.

쇼핑몰 내 상점이 바깥 통로를 이용해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 문을 열 수 있으나, 자격증이 있는 전문 헬스 케어 서비스 종사자들이 근무하는 상점, 약국, 식료품점은 어떠한 통로를 향해 접근 가능한가를 고려해, 문을 닫거나 문을 열 수 있다.

여가 시설 폐쇄

a. 빙고게임장, 볼링장, 당구장, 놀이공원, 롤러스케이트·아이스스케이트장, 골프장, 사회적, 사교적 클럽, 야영지, 유흥세와 입장료 부과하는 모든 여가 시설은 폐쇄해야 한다.

기타 시설 폐쇄

a. 타투업소, 테닝업소, 이발소, 미용실, 네일샵

예외

a. 아래와 관련된 의무를 가진 이들의 경우엔 행정명령에서 제외된다.

- 연방, 주, 지방정부 건물과 시설을 오가는 경우

- 신문, TV, 라디오, 언론 서비스

- 노숙자보호시설, 푸드뱅크, 무료배식소와 같은 저소득층을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와 시설

- 가정폭력과 같은 자택, 거주지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경우

- 노숙자인데,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와 메릴랜드주 보건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에 부합해 정부기관 및 기타단체가 쉼터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대피소를 만들도록 장려될 경우.

본 행정명령은 주비상사태가 해제될 때까지 유효하며, 행정명령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5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징역과 벌금형에 동시에 처할 수 있다.